

##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994년 3월 15일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2월 4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4년 3월 2일 회부(의안번호 제80호)
- 다. 상정 일자 :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
(1994년 3월 15일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허병태)

#### 가. 제안 이유

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4074호 - 1993.12.31)에서 “별표 9”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 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 골자

대통령령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, 하수, 폐수, 쓰레기 처리 업무,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,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93.12.31 대통령령 제14074호에 의거 장려수당에 관련된 특수 행정 분야 근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도록 하는 내용임.
- 해당 부서 및 대상자
  - 위생기 처리장, 하수처리장, 쓰레기 처리장, 분뇨, 하수,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
  - 화장장 관리 사무소, 시체 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
  - 공원묘지, 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업무 근무자에게 지급
- 장려 수당 지급 금액

대상자	지급 금액	비고
시체 화장 업무,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업무 근무자	월 18만원	
분뇨 처리 업무 근무자	월 15만원	
하수,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 근무자	월 12만원	

- 지급 목적
  - 특수 환경에 근무하는 자의 사기를 양양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임.
- 94. 1. 4 조례 개정 지시 - 내무부장관
- 94. 1.17 개정 조례안 준칙 시달 - 부산직할시장
- 결론적으로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 및 규정에 그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적법 적정한 것으로 생각됨.

## 4. 질의, 답변 요지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이태홍 간사	허병태 총무과장	<input type="radio"/> 우리구에 특수 환경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있는지? <input type="radio"/> 특수 환경 근무자 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지금까지는 없으나 용당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음. <input type="radio"/> 그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만 지급
임종하 위원	"	<input type="radio"/> 청소 인부는 포함되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기능적 이상의 일반적 공무원만 해당됨.
배종환 위원	"	<input type="radio"/> 용당동에 설치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직원은 몇명이나 되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쓰레기 소각장 완공 이후 실제에 따라 정원 별도 책정 현재로는 확인이 곤란함.
조해수 위원	"	<input type="radio"/> 남부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?	<input type="radio"/> 남부하수처리장은 부산시 소속 사업소로 우리구에 있지만 남구청 산하로 될 전망은 없음.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